



기여분과 효도계약서

효도(孝道)를 권하는 사회

최근 자녀의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효도한 자식들에게 소위 '효도상속분'을 주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인륜의 덕목으로 여겨졌던 효(孝)를 이제 국가가 권하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기여분'과 '부담부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효도상속분'이라 불리는 기여분

고객 상담을 하다보면 효도를 강요하는 부모와 이에 반발하는 자녀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효도하는 자녀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부모도 자녀의 효도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을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기여분' 및 '부담부 증여'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자녀 측에 유리한 제도인 '기여분'**을 살펴보자. 동아일보 2015년 12월 10일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해 인용한다.



2011년 경 체장암 선고를 받은 A씨가 투병생활을 시작한 뒤 그의 곁을 지킨 건 자녀가 아닌 조카였다. A씨는 점점 친자식들과 교류가 뜸해지는 대신 조카와 각별한 관계로 지냈다. 병세가 악화되자, 2012년 4월 경 A씨는 조카를 양자로 삼았고, 6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죽기 석 달 전에는 "내 장례를 조카가 집전해 주고, 유산 중 현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카에게 상속해 준다"는 유언장도 남겼다. 장례를 치른 후, 2013년 초 조카 B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내가 A씨를 홀로 부양하고 간호하고 임종도 지키는 등 특별히 모셨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로 해 달라"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배인규)는 "홀로 귀국한 A씨를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기여분을 25%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여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데, 위 사례에서는 조카가 사망 6개월 전 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조카는 상속인 자격으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여분이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제도'이다. 소위 '효도상속분'이라고도 한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녀는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을 통상의 부양 정도 이상으로 극진히 부양했다는 사실 및 그 부양기간이 장기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bhs0319@hanafn.com

▶ 학력·자격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변호사

▶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세금·법률 상담 사례집

▶ 경력
청주지방법원 영등지원 조정위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등 자문
SBS스페셜 <상속>, 서울경제 TV 등 출연
조선일보, 동아일보, YTN 등 언론기고
(現)한국 가족법 학회 정회원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 작성하는 효도계약서

다음으로 부모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제도인 '부담부 증여'를 살펴보자. 몇 년 전 퇴직한 A씨는 아들의 결혼을 대비하여 장남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해 주려고 한다. 그 돈은 A씨가 받은 퇴직금 및 그 동안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라 망설여지긴 하지만 재건축의 호재로 투자 가치가 높다는 설명에 솔깃한 심정이다. 다만 A씨는 그의 전 재산으로 아파트를 사줄 경우, 아들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에게 효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의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효도계약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한 형태인 '부담부 증여'의 일종이다. 효도계약서의 핵심은 증여를 하되 **효도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이다.** A씨가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① 효도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② 효도의무 불이행 시 아들은 A씨

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반환한다는 문구를 꼭 넣을 것 ③ 그 의무의 내용이 증여하는 아파트의 가치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을 것 등이다. A씨가 효도계약서 작성을 통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아들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증여한 아파트를 되찾아 올 수 있다. ♪

summary

- ① 기여분이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제도'이다. 소위 '효도상속분'이라고도 한다.
- ② 기여분은 상속인만이 주장할 수 있다. 사실상 동거하던 사람이나 상속 포기자 등은 기여분을 받을 수 없다.
- ③ 자녀의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 ④ 효도계약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되 효도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